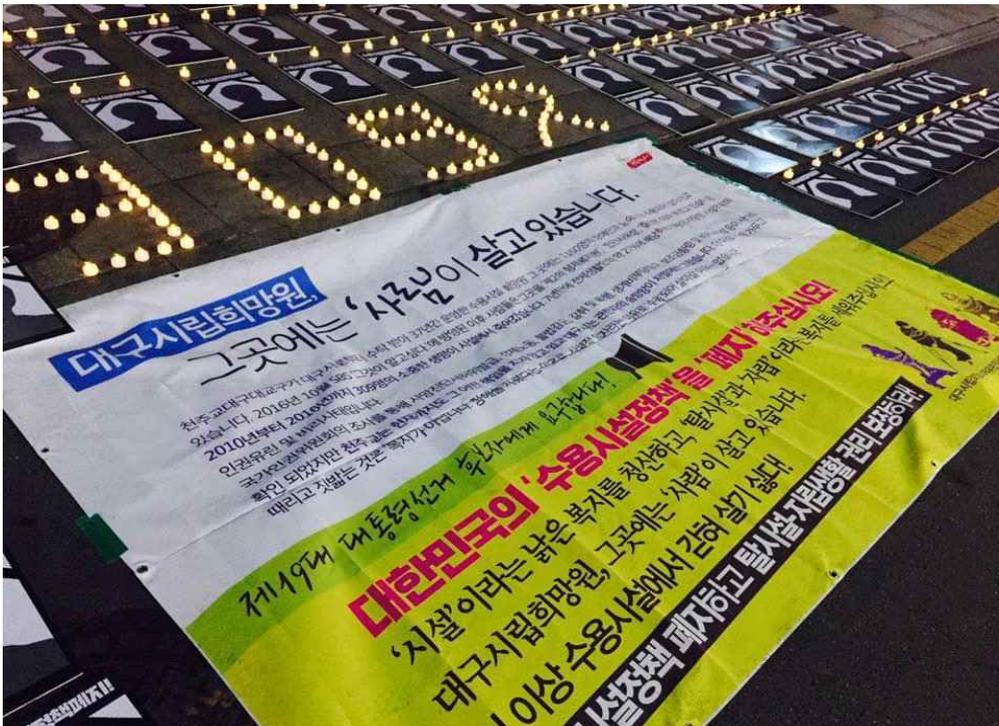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 시 : 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
- 주 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가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벽지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토론회 순서

- 수화통역: 이현정, 박미애
- 좌장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사무총장)

시간	내용
14:00~14:10 (10')	○ 인사말 • <b>윤소하</b> (정의당 국회의원)
14:10~14:40 (30분)	○ 주제발제 • <b>조민제</b>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4:40~15:30 (각 10분')	○ 지정토론 • <b>홍리스행동</b> , 아랫마을 홍리스야학 학생 • <b>천노엘</b> 무지개공동회 대표이사, 신부 • <b>서종균</b>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 <b>강인철</b>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 <b>김명연</b> 상지대 법학교수, 탈시설정책위원
15:30~16:00	○ 질의응답 및 폐회



## 목 차

■ 인사말	1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 발제문]	3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와 분석 (조민제)	
□ 토론문1]	27
시설 말고 복지 달라 (흠리스행동)	
□ 토론문2]	31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방향 (천노엘)	
□ 토론문3]	37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서종균)	
□ 토론문4] (강인철)	41
□ 토론문5] (김명연)	43
□ 참고 자료	45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토론회를 주관하신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 척결을위한전국장애계대책위,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벽지기장애일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조영선 변호사님, 조민제 대책위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 좋은 말씀 나누어주실 토론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해 대구희망원의 비극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로 불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연대하고, 대구시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당부하고, 국정감사에서 희망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대구천주교유지재단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민간 위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곧 민주화 30돌을 맞는 나라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어려운 이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좋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탄탄한 나라, 기회가 공평한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인권이 단단하게 지켜져야 비로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희망원 문제 해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의 출발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희망원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망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의미로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조민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 I 개황

“인간 사육장에 온 걸 환영해요.”

지난 22년은, 1993년 그가 희망원에 입소한 첫날  
한 식구가 건넨 ‘냉소적 인사말’의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 한겨레, “폭행, 갈취, 강제노동… 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2016.08.26.) 중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은 195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영권을 수탁 받아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산하에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 4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는 1,150명의 생활인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이 시설은 2006년 2월 최우수 부랑인보호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최우수 평가시설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함.

2016년 4월 시설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로 인해 노숙인시설 내에서 일어난 생활인 폭행 및 가혹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같은 해 6월 시설에서의 생활인 다수 사망사건, 급식비 횡령 등의 비리, 장애인 강제 노동력 착취, 독방 감금시설 운영 등이 추가로 알려짐.

이 후 시설 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2016

년 10월 8일 SBS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이 집중 취재되어 방영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다수 생활인 사망, 노동자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갈취,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국가보조금 허위 청구 및 급식비 횡령,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강요와 노동력 착취 등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국가보조금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그 사용처에 있어 시설 원장 신부 개인이 아닌 천주교대구대교구(대구교 조환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조직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음.

지금까지 진상규명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고문방지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대구시립희망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운영주체였던 교회로부터 가해 행위와,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구광역시 즉, 국가로부터의 원인제공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음.

## II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의 주요 문제

※ 참조 : 김광수 국회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 1. 시설 거주 다수 생활인의 대량 의문사와 사망사건 조작, 보호의무 소홀

희망원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309명의 생활인(전체 정원의 26.9%, 연평균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1000명당 사망자(5.4명)의 7.5배에 달함.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1975년~1987년)동안 531명(연평균 44.3명)이 숨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문제적인 수치임. 사망한 생활인들 대다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라는 점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11월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사망한 309명 중 최소 29명이 사망 원인에 의문이 있다고 밝힌 점에서도 그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결정문에서 ‘시설종사자들이 평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인들의 행동특성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고, 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망사건이 원인에 대한 조사없이 단순 병사로 처리되어 사망 전 질식, 낙상, 폭행 등 피해 발생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질 수 없었다.’고 명시했음.

또한, ‘사망사건 중 외인사로 사망진단을 하고도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인과 기도질식, 낙상 등에 의한 외인사가 명확함에도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함. 희망원에서 발생한 납득이 되기 어려운 죽음들은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아래 시설 내부의 운영체계와 잔혹한 문화들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됨.

## 2. 생활인들에 대한 불법감금, 부당노동강요, 폭행 및 갈취 등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 및 비민주적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설립부터 지금까지 희망원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왔음이 확인됨.

‘쇠창살로 이루어진 공간에 강제로 집단수용하고, 질서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독방에 가두거나 쇠사슬을 채우는 등 학대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종사자들이 시설거주인 중 일명‘동장’을 두어 동료 거주인들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군대식 일석점호 실시, 생활지도를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 폭언 및 폭행, 엎드려뺨쳐 및 바닥에 머리박기(일명‘원산폭격’) 등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등 흡사 ‘인간사육장’과 같았다’는 증언이 있었음.

‘지적장애 여성거주인에게 매우 낮은 임금을 주고 빨래,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자녀의 목욕 지원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적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였다’는 시설 종사자의 증언이 있었으며, 시설로부터 동장으로 임명된 생활인이 ‘임의로 야간시간에 신입 거주인들을 내부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독방(보호실 또는 심리안정실)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주인의 증언이 있었음.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입소

자)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에게 맡겨, 환자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하고 취침한 상태에서, 구토 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희망원의 생활인들 대부분은 정신장애,알코올중독 또는 신체장애인으로 ), 장기간 노숙생활에 따른 지병악화 등으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시설 측은 입원한 생활인들 중에서 ‘간병도우미’를 모집함.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간병시간(24시간)과 적은 보수로 인해 자원자가 적어, 대부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간병인으로 동원한 것임.

뿐만 아니라, 시설 측은 생활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내부규칙을 두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생활인들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 최장 47일 ‘안정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강제 격리하기도 함.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사를 통해 1990년 이전부터 내부규정을 통해 음주, 도박, 무단외출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생활인에 대하여 시설 측이 자체적인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사설 감금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계속 운영해 옴. 무단 외출을 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9일 감금된 생활인이 있었으며, 그릇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23일 간 감금된 생활인도 확인됨.

희망원에서는 종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적장애를 지닌 생활인을 참고로 데려가 과녁으로 세워놓고 경품사격용 공기총을 장전하여 수회 생활인을 향해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생활인의 팔과 몸 부위를 노끈으로 결박한 후 복도의 보행안전바에 3~4시간 묶어두기도 함. 생활인들이 장애로 인해 금전관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종사자가 생활인이 직접 자신의 금액을 출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도 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생활관별로 거주인의 상하관계를 조장하는 동장제도의 운영, ② 자의적인 시설 운영규정을 두고 생활규정을 위반한 거주인에 대한 징벌적 보호실(독방) 감금 조치, ③ 직업재활계획 등에 따른 적정한 작업평가와 적정 임금의 지급이 없는 취사, 간병 등 부당 노동행위, ④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갖는 거주인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강압적인 개입 관행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함.

대형 수용시설인 희망원은 생활인들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위계적인 조직운영 행태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수용된 생활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종사자와 생활인 간, 생활인과 생활인 간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종사자들의 상승적인 생활인 폭행 및 학대, 금품갈취를 비롯하여 부당한 작업강요와 노동력 착취, 불법 감금실 운영 등이 만연했음. 더불어 인권침해 등 행위가 발생하였어도 묵인하거나, 보고되어도 소극적으로 무마하는 등의 조직보호 인식과 관행이 팽배했음.

### 3. 국고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비자금 조성

대구지방검찰청은 희망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7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국가에 허위로 청구해 6억 5,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부정 지급하였다고 발표함.

또한 희망원은 산하 4개 시설에 대한 통합식당을 운영하며, 식품판매업체 A로부터는 2000년부터 15년 간, 식품판매업체 B로부터는 2011년 3월부터 4년 6개월 간 식자재를 납품받아 왔음을 확인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를 실제보다 양을 부풀리거나, 단가를 조작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품목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보조금을 청구한 후,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5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였음.

2017년 2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런 희망원 비자금 조성 및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해 현직 신부 및 수녀 등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희망원 사건의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 위 인권침해 및 비리 정황은 2016년부터 내부 고발자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오히려 시민사회는 현재 처벌의 대상이 된 신부 등이 교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일부에 불과하며 수사를 전면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주요 의혹의 이유는 검찰이 수사과정 중 희망원에서 조

성한 비자금이 상당량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교회 관리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한 점,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식품판매업체들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대구시립희망원과 같은 방식으로 1983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해 온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수사하지 않고 있는 점, 교회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에도 역시 같은 업체들이 거래한 바 있으나 수사하지 않고 있는 점, 36년 간 희망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이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교구장과 동일한 신분임에도 교구 및 재단을 압수수색하거나, 대주교를 소환하여 수사하지 않는 점 등 때문임.

#### 4. 근원적인 문제 : 수용시설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지는 한국전쟁 이후 외국 선교사 등을 통해 자리매김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며 종교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그 복지 방식의 중심에는 항상 수용 시설이 있었음. 이로써 생활인의 인권은 종교와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이해관계 속에 놓여 질 수밖에 없었으며, 언제나 생활인의 권리에 앞서 운영기관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음. 이런 경향은 국가의 방임 속에 더욱 강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대구시립희망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대형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사회와는 격리된 하나의 왕국처럼 형성되어 지금의 기이한 한국적 사회복지의 풍토를 낳은 것임.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의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가 그 운영주체인 특정 종교법인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조직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더불어 근원적인 원인제공자로서 한국 정부와 대구광역시 자치단체를 지목함.

수용시설 이 외에는 본인이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으로서 시설이 있음. 때문에 본인이 살아가는 곳에서 집단적인 생활과 규율 등으로 인해 어떠한 인권침해나 비리를 목격하거나 때로 피해 받는다 하더라도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임. 이런 장기적인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생활인들의 권리는 배제되며, 무력화됨. 이것은 또 다시 수용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 원리가 되어왔음.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 입소자

중 본인 스스로(21.2%)한 경우보다, 타인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약 3배 이상 많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의 의미는 부랑인시설에 입소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타인의 강제에 의해 입소하는 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해야만 한다고 볼 수 있음.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경우는 불과 21.2%로 나타남.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입소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는 13.90%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였다’는 21.03%로 나타남. 또한 ‘시설 입소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강력한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다’가 35.29%, ‘내가 결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다’가 26.56%로 나타남. 결국, 시설 입소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은 13.90%에 불과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설득 또는 강요로 비자발적인 입소를 한 경우가 82.88%나 차지하고 있는 것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당사국이 장애인을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 대우와 체벌을 당하게 하는 강압적 처방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와 같은 우려를 표해온 바 있으며,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하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를 유의미하게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음.

### III 사태이후의 경과 및 문제점

#### 1. 너무나도 안일한 천주교와 희망원의 태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가 지난 2016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 사회적파장이 거세지자, 천주교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는 2016년 10월 13일 천주교대구대교구 홈페이지 교구알림을 통해 ‘대구시민과 교구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책임통감 및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의 입장을 발표함. 같은 날 대구시립희망원 박강수 총괄원장 신부 및 산하시설 원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원장 및 팀장급 간부 24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잘못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 단 시설운영은 포기 할 수 없다”고 함.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생계비횡령이중장부 폭로 등에 희망원측은 일체 사실을 부인(현재 생계비횡령이중장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져 前 원장신부가 구속됨)하다가 천주교대구대교구측은 2016년 11월 7일 대구시에 대구시립희망원 운영권반납의사를 표명하였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하기로 함.

2016년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대구시에 '운영권 취소'를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천주교대구대교구측은 여전히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권을 유지하며 인사권행사, 직원 및 생활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지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음. 또한 희망원과 관련하여 前원장신부, 前회계과장수녀, 임직원 등 7명이 구속 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희망원측에서 사표수리를 한 사람은 '0'명임.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 측은 천주교대구대교구측에 희망원 운영권 반납시기 확답과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대구시와의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 등의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2017년 3월 31일부로 해지하겠다는 뜻을 대구시에 전달하였고, 대구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왔을 뿐 면담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음. 대구희망원대책위는 2017년 2월 염수정추기경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하려했으나 '대구대교구의 일'이라며 면담요청을 거부하였고, 2017년 3월 6일, 주한교황청대사관에 프란치스코교황에게 대구희망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으나 서한접수 등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는 상황임.

위 상황처럼 희망원과 천주교측의 겉으로는 사과하나 뒤로는 실질적인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안일한 태도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3월 22일 명동성당 특별미사 현장에서 기습시위를 진행하며 천주교측의 희망원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신자들과 신부 등은 시위를 하던 활동가들에게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고, 바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함.

또한 3월 24일 천주교주교회의 총회 폐막식에서 김희중 의장은 22일 명동성당 시위에 대해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대구 희망원 문제에 관해 김희중 의장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관청과 천주교 재단의 보조, 지원 부족으로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필요한 것보다 인력을 줄여 쓰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전히 희망원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을 이해못하는 모습을 보여줌.

## 2. 중간수사발표 이후 방향을 잃은 검찰수사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년 2월 9일, 희망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 측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장 및 직원들의 각종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하여, △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입소자)들에게 중증환자의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을 확인하였고,

△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들을 징계하기 위해 독방시설을 운영하면서 약 7년간 총 302명을 1인당 평균 11일 감금해 온 사실을 확인함.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생활인 간 폭행 등으로 2명이 사망한 사례도 확인되었음.

한편, 비자금조성 등 자금비리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 담당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약 6억여 원을 허위지급 받아 부정 수령하고,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중에서 5억 8,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감금, 급식비 횡령 등으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입건하여 그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1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그러나 검찰이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

하고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천주교대구대교구와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희망원 사태를 희망원 내부 관련자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음. 신부, 수녀 등이 연루되어있는 범죄이고 현재 재판에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전관출신 변호사가 포진된 로펌 선임을 지원하고 있는 정황을 보아 천주교대구대교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임.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와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조환길대주교 고발을 준비 중에 있음.

### 3. 부실감사 . 부실대책, 오로지 민간위탁만 강행하는 대구시

대구시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해결을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4회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음. 그동안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운영권즉각반납, △대구희망원의 공적운영, △ 대구희망원 폐쇄 및 기능전환, △희망원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요구함.

그러나 대구시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운영권 즉각 반납에 대해 시간을 지체하고, 향후 희망원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만을 고수하며 희망원폐쇄 및 기능전환, 탈시설 및 자립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등 본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협상결렬을 선언함.

협상결렬당시 대구시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은 대화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자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했으나 지난 3월 13일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및 혁신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

대구시 감사결과와 혁신대책을 살펴보면 대구시 감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결과를 재탕함. 시 자체감사 결과로 내어놓은 것이라곤 시설 운영 규정에 대한 승인절차 미이행 등 단순 행정 절차 상의 문제만을 지적하는데 그침. 또한 희망원 내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인권유린과 비리를 밝히지도 못했으며, 논란이 된 바 있는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관계, 대구정신병원의 무자격 위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못함. 가장 큰 문제점은 37년 간 벌어진 술한 비리와 인권유린의 중심에 있는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해 어떤 처벌과 조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임.

대구시가 내어놓은 혁신대책을 살펴보면, 운영개선 사항 20개 중 18개가 입.퇴소 및 내부규정 상 절차 정상화, 회계질서 확립, 편의시설 설치 등 굳이 혁신대책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 채움. 대구시는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생활인을 줄여 기능전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더불어 2020년까지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글라라의 집을 기능전환하고 장애인 100명을 탈시설시키겠다고 구체적 예산도 제시하지 않음.

권영진 시장은 이미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2018년까지 300명의 시설 장애인들을 탈시설 시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 후 목표치가 100명으로 줄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목표 또한 이행치 못하고 있음. 근본적인 혁신대책이 아닌 짜깁기 대책에 불과한 상황이라 평가함.

대구시는 지난 3월 23일, 대구시립희망원 민간위탁 모집을 공고함. 민간위탁의 폐단과 적폐를 본 사태를 통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위탁 카드를 꺼냄으로써 대구시의 책임을 전가하고 땀질식 처방에 불가한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 및 희망원의 근본대책을 발표, △대구시의 희망원 직접 운영 및 탈시설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산하 수용시설을 폐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책임자를 처벌 및 법인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자립생활 정책을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4. 단기처방만 내리고 어떤 준비도 없어 보이는 보건복지부**

대구시립희망원의 사망, 폭행,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과 각종 횡령 비리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20일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발표함.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국정감사에 앞서 책임면피용으로 급조한 꼼수 대책이라고 지적함. 수 백명의 생활인 사망과 은폐, 강제노

동과 착취, 폭행, 수 억 원의 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느닷없이 △생활인 면담방식의 실태조사 실시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공동사용 공간 내 CCTV 설치 권고 등을 주 골자로 하는 뒷북대책을 발표한 것임.

생활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대구시에서 실시 중에 있으나 여론에 쫓겨 급조한 조사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무책임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다분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CCTV는 그야말로 권고에 불과한 조항이었음.

대구시립희망원은 최근 노숙인생활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4개 시설로 구분은 했지만 한 장소에 1,150명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모든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만 별도로 분리하여 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는 것에 불과함.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되, 인권침해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였으나 반문하자면,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슨 사전 예방 노력을 했고, 어떻게 강력히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음.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수십 년 간 자행된 인권침해와 비리를 잉태시키고 키운 장본인은 바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임에도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늘 하던 방식으로 땀질 대책만 내놓은 것임.

뿐만 아니라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탈시설과 수용시설폐지정책에 대한 예산은 2017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용시설을 늘리는데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지원, 자립생활주택, 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등이 모두 지자체에 방치되어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며 산발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음. 국가차원의 수용시설정책폐지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룬다면 희망원사태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대구시립희망원측에서 제출한 식단표 허위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음. 광주인화

학교사건, 인천해바라기의문사사건 등 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보건복지부의 급한 불끄기 대책으로 시간만 지체되며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 IV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한 대책위의 요구

### 1.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대구지역 요구안

#### 1-1 대구시립희망원의 탈시설/시설폐쇄-기능전환 모델화 목표 발표

##### □ 현황 및 문제점 (생략)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및 제1조의2(기본이념)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의 권리)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권영진 대구시장 정책공약 협약 중 '탈시설 지원 부문'(2014)

##### □ 추진방향

- 대구시립희망원의 공적 운영을 통한 ▲탈시설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우선의 수용시설 폐쇄 ▲기능전환 모델화 목표 공식 발표

#### 1-2 비리재단 민간위탁 즉각 철회, 책임자 처벌, 법인설립 허가 취소

#####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및 비리 주요내용(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의 공론화, 재단의 운영권 반납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 운영 중

- 2016년 12월 원장 및 사무국장, 중간관리급 인사 사표 제출하였으나 내부 조치 없어
- 파행적인 현재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비리재단에 대한 엄벌부터 조치 필요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제1조의2(기본이념),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설치 조례 제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의 권리)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설치조례 제9조(지도·감독)
- 권영진 대구시장 정책공약 협약 중 ‘탈시설 지원 부문’(2014)

#### □ 추진방향

-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현재 희망원 민간위탁 즉각 철회(즉각 운영권 반납)
-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및 재산환수
- 원장 및 사무국장, 중간관리급 사표 제출 인사 전일 퇴출
- 비리 및 인권침해 연루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 □ 비 고

- (부산)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형제복지원 운영) 법인 설립허가 취소
- (광주) 우석법인(인화학교 운영)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전북)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자림인애원 운영) 법인 설립허가 취소

### 1-3

### 대구시립희망원 공적 운영 체계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및 비리 주요내용(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 민간위탁에 따른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예방하고, ▲탈시설 지원 ▲ 수용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운영체계 마련 필요

## □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설치 조례 제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대구시설공단 설치조례 제15조(대행사업)
- 권영진 대구시장 정책공약 협약 중 '탈시설 지원 부문'(2014)

## □ 추진방향

-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현재 희망원 민간위탁 즉각 철회(즉각 운영권 반납)
- 민간 위탁 철회에 따른 공무원 파견 및 시설 운영 정상화  
→ 대구시 산하 공단, 출자·출연기관 활용을 통한 공적 운영체계 마련
- ▲탈시설 지원 ▲수용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추진
- 탈시설 지원 및 기능전환 로드맵에 따른 민/관 협력체 구성,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개선

### 1-4

###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원 생활인 탈시설 추진 및 글라리의집 폐쇄

##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및 비리 주요내용(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 시설 거주 장애인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탈시설 희망 답변 (대구경북연구원, 2012)  
- 단순 희망 58.6%, 지자체가 '활동보조인 및 주거지원 시' 탈시설 의향 70.5%
- 희망원 산하 수용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에 따라 거주 생활인 약 1,150명에 대한 탈시설 추진(비교적 탈시설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가고 있는 '장애인' 중심으로 우선 추진) 필요

## □ 추진근거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1조

의2(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중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자립생활 지원)
- 대구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자립전환 지원 4개년 계획(2015)
- 권영진 대구시장 정책공약 협약 중 ‘탈시설 지원 부문’(2014)

#### □ 추진방향

-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인 약 300명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전수 상담 실시  
(단순 욕구조사 지양, 탈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당사자 지원 상담을 말함.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심 IL코디네이터 유경험자 인력 활용)
- 2018년 내 장애인 생활인 100명에 대한 우선적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글라라의 집’ 폐쇄(폐쇄에 따른 종사자 인력 산하 타 시설로의 업무재교육 후 고용전환으로 서비스 인력 확충)

## 1-5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조례 개정

####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및 비리 주요내용(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 단순 시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된 현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희망원 산하 수용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 필요

#### □ 추진근거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중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자립생활 지원)

○ 권영진 대구시장 정책공약 협약 중 '탈시설 지원 부문'(2014)

## □ 추진방향

○ 희망원 조례 내

- 입소자의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 시장의 거주인 탈시설-자립지원 계획에 따라 협조해야 할 의무 명시
- 2018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명시
- 시립 희망원 산하 수용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 기능전환 방향 명시
- 위 내용들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명시

○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인 약 300명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전수 상담 실시

(단순 욕구조사 지양. 탈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당사자 지원 상담을 말함.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심 IL코디네이터 유경험자 인력 활용)

○ 2018년 내 장애인 생활인 100명에 대한 우선적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글라라의 집' 폐쇄(폐쇄에 따른 종사자 인력 산하 타 시설로의 업무재교육 후 고용전환으로 서비스 인력 확충)

## 2.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제19대 대선 요구안

### 목 표

- ❖ 시설보호에서 자립지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 방향 전환
- ❖ 대구시립희망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전달체계의 전환모델 마련

### 중점 추진과제

- ①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기능전환 모델화 시범사업 실시
- ② 대구시립희망원 공공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
- ③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1.

####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기능전환 모델화 시범사업 실시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수용보호 → 자립지원

○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 형성과 요구 증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12) : 탈시설 의향 57.5%,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62.1% 희망

- 서울시 조사(2009) : 탈시설 의향 57%,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70.3% 희망

- 대구시 조사(2012) : 탈시설 의향 58.6%,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70.5% 희망

○ 생활인 인원을 기준으로 한 국가 지원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사업자와 자립 생활 패러다임 충돌

→ 국가차원의 탈시설 지원계획 및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이해관계로 인해 운영자는 소극적 자세

→ 시설 운영사업자의 대다수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적 통제 어려운 현실

○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기존 시설들의 지역사회 친화적 기능으로 전환 모델링 필요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및 제1조의2(기본이념)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및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의 권리)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및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중앙정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중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 □ 추진방향

○ 중앙정부 차원의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기능전환 시범사업 실시 및 예산 책정

→ 탈시설 전문가 등과의 시범사업단 구성 및 세부 방향 수립

→ 설립주체인 대구광역시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 대규모 시설의 탈시설-기능전환 모범적인 모델 마련, 제도적 보완사항 반영 등

○ 단계별 접근

- 생활인 탈시설 적극 지원 : 노숙인, 장애인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상담 등 욕구 개발/지원

- 시설 규모 축소 : 전체 입소 정원 축소(신규입소 금지 등)에 따른 시설 규모 축소
- 수용시설 폐쇄 : 산하 4개 수용시설 폐쇄(국가보조금 및 시비 운영예산 절감)
-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확충 등 기능전환 지원

## 2

## 대구시립희망원 공공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과제 (1)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적 운영구조를 갖출 필요 있음.
- 민간위탁의 경우,
  - 시립시설이라 하더라도 탈시설-기능전환 방향 자체에 운영자가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진 불가
  -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재교육 등에 관한 안정성이 낮음(이로 인해 시범사업을 추진 시, 실제 인력으로 기능해야 할 종사자 집단이 오히려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중앙정부 또는 대구광역시 정책 방향에 따라 즉각적인 운영 개선 및 반영이 어려움 등
- 따라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지원이 필요함.

### □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과 대상 사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설치 조례 제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대구시설공단 설치조례 제15조(대행사업)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 추진방향

- 대구시립희망원 운영, 탈시설-자립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지원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 등에서 고려
- 기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구광역시가 요청하는 공공운영체계 마련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수용 중심 정책에서 탈피한 탈시설-자립생활 명문화 규정 필요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외원단체를 기반으로 한 민간구호시설의 설치로 출발.
  - 1960년대 국가 차원의 민간재원 확보 및 구호시설 관리 필요성과 민간복지사업자 차원의 재산축적 및 사업확장의 필요성 등이 중첩되어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사회복지법인 제도화.
  - 국가적인 복지 책임을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게끔 위탁하고,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 방식을 강화시켜 나간 결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수많은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형성된 복지재벌은 강화 경향을 보여옴.
  - 이에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한 국민여론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과정이긴 하나, 여전히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과 법인에 대한 소극적 조치 ▲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 중심의 규정 ▲인권침해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안마련 필요.
- 대선공약도 지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되어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 1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이 후 파기)
  - 장애인 수용보호 중심 정책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대안법률 제정 요구 확산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방향과 원칙

- :: 장애 정의 변화 - 의료적 관점 → 사회적 관점
- :: 전달방식 변화 - 공급자 중심 → 당사자 개인별 지원
- ::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강화
- ::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한 규정 명문화
- :: 기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항목의 규정화 및 실현방안 마련

## □ 추진방향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 법인에 대한 국가 통제 권한 및 수준 강화
- ‘탈시설’, ‘자립생활’, ‘기능전환’ 등 규정 명문화를 통한 정책 시행근거 마련
- 인권침해 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통한 권리 구제 조치 마련 등



## 나가며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시기에, 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윤소하의원님과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해 국민들이 싸워 일궈낸 촛불 혁명으로 현재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변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비상시적인 사회에서 일그러진 사회 곳곳의 모순을 변화하고자 하는 지금의 흐름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 복지의 상징인 ‘수용시설정책’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립희망원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 이 시기에 수용시설 정책이 폐지되지 못하고, 복지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지 못한다면 서두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사람’이 ‘사육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대구희망원사태로 방향성을 잃은 천주교측에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2016년 6월 12일의 ‘병자와 장애인들 위한 자비의 특별희년 주일’ 미사

강론에서 프란치스코교황은 “우월한 신체를 가진 것이 대중적 신화인 이 시대에 장애인들은 구석지고 외딴 곳에 격리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으며 연대와 존중만이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22일 명동성당 특별미사에서 행해진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시위를 미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조차 쫓아버린 한국 교회가 다시금 낮은자를 보듬는 천주교의 정신을 회복하고 대구희망원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구 쇄신과 진정한 사람을 향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조환길 대주교는 2016년 10월에 밝힌 입장과 같이 책임을 제대로 통감하고 자신을 비롯한 대구대교구에 대한 쇄신을 즉각 단행하고 대구시는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용시설유지정책을 중단하고 탈시설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마음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스마트( 홈리스행동,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1)

제가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저는 1987년 1월 24일 경북 포항시 대흥동에서 동네주민에게 발견되어 포항 선린 애육원에서 생활하다 서울에 있는 동방 아동복지회에 넘어가 그곳에서 3~4년 정도 생활한 뒤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새별 보육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고등학교 선배들과 저보다 나이가 어린애들도 있더군요. 처음 2~3년간은 무척 친절하게 잘해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생 형들이 저보다 1~2살 많은 형들과 싸움을 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만약 싸움에서 지면 고등학생 형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일차려는 기본입니다. 어느 날은 각목으로 선배들에게 한사람씩 돌아가며 줄빠따를 맞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선배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보거나 하면 보육원 옆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 산으로 끌고 가 맞는 날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나가기 전날 밤에는 때리지 않더군요. 보육원에서는 다음 선배들이 다시 윗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좀 덜하더라고요. 대낮에는 학교에 가기 때문에 좀 덜하다가 선배들이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하면 그날은 또 밤새 맞아야 했습니다.

도저히 구타에 못 견뎌서 초등학교 4학년 쯤 되던 해에 처음 가출해서 열차에 무임승차하여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잠은 공사현장에서 자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공원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공원에서 자던 중, 동네 주민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서초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대방동에 있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6개월쯤 지나니 그곳 선생님들이 집 주소와 연락

1)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은 학생과 교사 간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애칭을 사용하며, '스마트'는 글쓴이의 애칭입니다.

처를 물어 보더군요. 그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보육원에 보내 질까 봐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보육원에 안 가려 했는데 상담소 선생님의 거짓에 속아서 2달 쯤 지나 다시 새별 보육원에서 와서 저를 데리고 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잡혀 들어가니 데리고 가신 선생님께 몇 번 맞고 반성문 쓰는 걸로 끝났고, 그 후 2~3번을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막상 서울로 나오니 배는 고프고 잠 잘 곳은 없고 해서 정체가 없이 돌아다니다 길가에 버려진 신용 카드를 주워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게 잡혀 조사를 받고 다시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아들이신 총무님께 안 죽을 정도로 맞고, 총무님이 학교 다니지 말고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목장(경북 칠곡군)에서 일을 하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될 때 쯤, 목장에 가 목장 관리인 아저씨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있을 때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소를 4~50마리 정도 키웠는데 저는 소의 밥을 주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낸 뒤 보육원에서 데리러 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내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무렵, 정말 이렇게 맞고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 5월 8일 어버이날에 보육원 근처도로에서 차에 뛰어 들었습니다. 6개월 쯤 병원에서 입원생활하다 보육원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겨 그곳으로 전학 간 뒤 6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다 다시 또 나오게 되어 대전에서 돌아다니다 밤중에 갈아 입을 옷이 필요해서 길가에 세워진 트럭 화물칸에 있는 옷을 꺼내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발각되어 구청으로 넘겨져 구청 직원들과 같이 대전 자강원이란 노숙인·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동 시설은 다 찼으니 성인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시설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대충 열아홉, 스물 된다고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인 장애인 시설인 자강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강원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0평 남짓한 작업실 겸 생활하는 방에 많게는 30명, 적으면 15명 정도 되는 방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들어간 첫날 아침부터 쇼핑백 봉투 접기 일을 하였습니다. 일당 대신 나오는 건 담배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봉투 접기 생활을 하다 하루는 갈혀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해서 잠깐 밖에 나가려 하니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저씨들에

게 잡혔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몇 주 뒤, 밤에 도망가려다 발각되어 가족으로 된 수감에 손을 뒤로 묶인 채 지하실 독방에 끌려가 안 죽을 정도로 맞고, 독방에서 3주 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나다 1차 퇴소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3개월을 더 그곳에서 봉투 접기를 하며, 또 3개월을 버텨 2차 퇴소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퇴소 심사에 합격해서 나오는데 원장이 제 옷을 뒤졌습니다. 그때 제게는 자강원 들어오기 전 구청 직원 분들이 나중에 나올 때 차비하라고 준 몇 만 원이 있었는데, 원장이 그것을 뺏으며 밥 값 안 낼 거냐, 안 낼 거면 여기서 계속 있으라며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강원 원장이 차비하라며 2,000원을 줘서 나와 대전역에 가서 서울행 열차에 무임승차해서 서울로 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도에서 노숙하며 자던 중, 같이 자던 분들이 서울역 지하에 가면 무료로 밥 주는 데가 있다하여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전파출소 앞 지하도 앞에 앉아 있는데 40대 중반의 남자가 와 음료수를 사주며 혹시 일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하기에 저는 16살이란 어린나이에 그분 말에 속아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에서 18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생활하다 2016년 7월 달에서야 인간 사육장 같은 곳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4번 탈출한 적이 있었으나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일을 해 줘 받은 돈을 모아 아예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sup>2)</sup>

노숙인 시설에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구타도 굉장히 심하고 그랬습니다. 희망원 사태 이후 작년 9월 21일 날, 복지부에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내 놓은 것을 보여줘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인 면담방식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할텐데 그 시설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원생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민간인으로 인권지킴이단을 둔다고 하는데 원장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지 원생들의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복지부의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은 희망원 사

---

2) 엮은 이야기는 현재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이 번지지 않도록 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그 결과는 월급도 못 받고 염전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시설들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폭행, 인권침해만 저지르는 곳이었고 제 삶을 하나도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수급을 받으면서 다섯 달 째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쪽방이지만 단체생활이 아니고, 나만의 공간이 있고, TV 보고 싶을 때 TV 볼 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정부나 구청, 지자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홈리스들을 시설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다 돈 주지 말고, 장애인, 홈리스들이 집을 얻어 살 수 있게 하는 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천노엘 (무지개공동회 대표이사, 신부)

## 1. 초기교회의 장애인 복지

예수님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수용시설에 보내는 것 보다 사회 안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즉, 나병환자, 정신질환자, 창녀, 장애인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고향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따라서 초기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노인, 장애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자기 고향에서 돌보았다. 436년에 교회(카르타고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성당 옆에 '주님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님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작은 집단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항상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반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수도원 역시 격리된 공간이 아닌 수도원 안에 부랑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공간을 비워두도록 하였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부랑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봉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묵시 3,20).**

돌(Doll, 1962)은 장애인과 소외당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희망을 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봉사 활동을 하였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애공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부랑인들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돌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소외된 사람, 장

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가정이란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파비올라(Fabiola)라는 사람은 4세기경 자기 집에서 이러한 환대하는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었다. 또 헝가리의 성 엘리사벳(Elizabeth)은 투링지아(Thuringia) 왕자와 결혼하였는데 자기의 성 전체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환대 장소로 사용하였었다(Wolfensberger, 1979). 그녀는 '우리의 예수님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일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오늘날우리는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를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저스티니안(Justinian), 비잔틴(Byzantine)과 같은 수도원에서는 특별히 지적장애인들을 돌보았다(Doll, 1962).

어떤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은 돌그릇에다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으나 환대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은그릇에 진수성찬을 대접하였다. 그래서 초기의 환대의 집을 '주님의 집(Domus Domini)'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환대의 집을 '주님의 집'이라 부르고 있다. 중세 유럽에는 수천개의 환대의 집이 있었다. 환대의 집은 도시에 있는 성당 옆, 수도원 근처, 혹은 마을(도시) 안에 있는 주택가의 일반 주택들과 함께 있었다.

이러한 환대의 집 중에 일부가 지적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파리 근교에 있는 성 빈센트 뿔 자비의 수녀회가 설립한 수용소이다. 이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Gerheat & Litton, 1979)

## 2. 대규모 시설 설립

Crusades(십자군전쟁) 때문에 나병환자가 많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대형시설을 설립했다. 14세기에도 프

랑스 나병환자들을 위한 대형시설 약 2000개 있었다. 이후 나병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수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사회약자들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예를들어, 한국전쟁의 경우 고아들을 위한 시설이 생겨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665년 프랑스 루이14세 파리 사회적 약자들 즉, 빈곤, 장애, 부랑인을 위한 Salpetriere 수용병원이 있다. 이러한 모델이 유럽 전체적으로 퍼져있었다. 유럽의 많은 수도회가 그 모델을 선택하고 장애인들이나 사회약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대형시설을 운영시작했다.이후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장애인이나 사회 약자들을 위한 대규모시설을 설립했다. 이런 대형 시설에서 인권 침해의 사건이 많이 생겼다.오늘날 까지 (2017년) 희생자들이 국가나 수도회를 소성하고 보상금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대형 시설 생기게 된 원인은

- 1) 자본주의의 출현
- 2) 계몽 운동
- 3) 산업혁명
- 3)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통제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억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과 규율에 순응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 사회로부터 제거되는 것이다. (Louis Althusser, 1971)

자본주의는 규율과 통제를 필요로 한다. (Foucault, 1972)

처신을 잘못하면 수용소 기다린다. (Oliver 1999)

### 3. 탈시설화 운동

서구 여러 나라들의 수용시설은 점점 대규모화 되고, 열악한 생활환경, 사회와 격리되고, 집단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수용시

설에 수용된 이들의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며 점점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66년 Blatt의 Christmas in Purgatory 사진첩이 공개되면서 장애인 가족들과 사회적인 비판이 쏟아지게 되었다.

이런 대형 시설에서 시설에서도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되었다. 지금(2017년)까지도 희생자들이 국가나 수도회를 고발하고 보상금을 요청하고 있다.

196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탈시설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탈시설화 운동은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중심을 그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격리적인 속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규모는 소규모화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며 일상적인 사회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시설변혁 운동이다.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로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 1)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Baker & Shculberg, 1967).
- 2) 거대한 수용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이나 착취, 영양 결핍의 상태들이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다.(Blatt & Kaplan, 1966)
- 3)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Zigler et al., 1990).
- 4) 경제적인 호황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다(Willer & Intagliata, 1984)
- 5) 새로운 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에 저명한 정치인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Bloom, 1977).
- 6) 정상화원리와 같은 새로운 복지철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Heal et.1978) 최소 제한의 원리(Turnbull, 1981), 발달모형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Ross et al. 1970)

**강조하는 것은,**

탈시설화 운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어떤 가치를 지향했던 사회가 다른 가치를 믿는 사회로 변화해가는 운동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을 향한 움직임이다.

#### **4. 복지방향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

교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생긴 공동체였다. 그리스도교회의 영향으로 장애인은 17세기까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아왔었다.

오늘날 선진 국가에서는 희망원과 같은 대형시설은 이미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 대기업 대표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격리된 대규모 수용시설’을 찬성하고 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가 희망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은 힘이 약한 이들을 위해 격리된 대규모 생활시설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서비스를 증진시켜나가도록 교회가 앞장서 나가야하고 또한 지방정부에도 이러한 방향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복지방향으로 전환하는 예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교구장님이 “희망원 사태를 교회 입장에서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한계가 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고 하였다.

## 5. 희망원의 문제

희망원의 문제는 어느 한 대형 시설,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온 국민 모두가 성찰하는 자세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는 국가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희망원의 사건을 기회로 각각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반성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선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공약은,**

**대규모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서종균(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 1. 시설에서 사는 것은?

‘시설’(여기서 시설은 장기간 거주하는 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설은 집과 여러 가지가 면에서 다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살펴보고, 그들을 객관적으로도 바라보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그런 생활을 옹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방지해온 것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설에서 사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제약받고 있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의 문제가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폭력으로, 횡령으로, 억압적 구조로, 관행으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기관과 인권단체, 기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동원된 이후 겨우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도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랑, 헌신의 이미지로 더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던 대구희망원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시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시된 권리는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 2.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 분야의 과제

무시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그것을 어렵게 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주거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거와 관련해서 필요한 변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재정착과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하나는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머무는 곳으로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장소로 여겨지며,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이런 지원은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착과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을 구하거나 옮기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새로 자리를 잡은 곳에서 주변 환경을 익히고 적응하는 것,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변화하는 필요에 맞추어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임대료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이웃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등의 주거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위기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서울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사례관리, IL센터의 동료지원 등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재정착과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지원주택

또 하나는 지원주택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설을 나가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원주택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주택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계속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원주택과 관련해서는 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성격의 자원이 원활하게 결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과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거주 형태인 지원주택이 제공되려면, 집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원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런 협력은 간단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원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공실버주택과 같이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원주택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주택은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없으면 지원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과 구분되는 스스로 자기 생활을 결정하는 자립생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거처를 계약하고 임대료를 내는 등의 책임을 지며,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스스로 정하는 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계약사항 이외에는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가 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지원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마다 지원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토론 4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 \*\*별도 토론문이 없어 토론회 당일 속기록을 추가함.

- 강인철: 한달전쯤 윤소하의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대구희망원 토론회에 나와달라.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처음 나갔습니다만 노숙인이 아주 많고 글라라의 집이 있는데 저희도 갔다왔습니다만, 그 때 국회와서 이야기하다보니 전반적인 것은 노숙인이나 장애인을 명확히 시설, 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그 곳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부터 그분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해야지. 장애/비장애를 나눠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토론문을 보며 좀 더 자세하게 사실 대구희망원이 갖는 여러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되서 왔습니다. 와서 토론문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 구체적이 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발제자,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교수님은 저번에 같이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했었죠. 굉장히 세서서 다음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볼 때 법리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교육학전공자가 보는 것과 사회복지학전공 교수가 보는게 좀 다르더라고요. 존중하지만,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접했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발제자께서 얘기하는 운영법인 민간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게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인권문제가 터졌을 때 개입을 지자체에서 하고 그러고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그만 할래'하고 하면 그뒤부터 할 게 없어요. 이게 현재 사복법 개정이 갖고 있는 제일 큰 한계이고 제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재단도 그만하겠다고 하니 끝나버리는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맞습니다만, 우리가 일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못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패널티를 줘야하는데 패널티를 줄 수 있는게 없다는 거죠.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라는 것을 사복법을 국가가 만들었고, 법인을 만들어준거죠 국가가.

그런데 이게 발전되지 못한 게 있고, 그럼 어떻게 잘 조정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복지법인은 문어발식으로 여러 시설을 합니다. 하나하는 곳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종교법인이나 사단법정도 많이 하는데요. 뭐 하나 잘못하면 자르면 쉽죠. 다른 법인에 신규법인을 위탁하려 할 때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구와 관련된 것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된 다 그 취지 자체가 의도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 했을 경우, 재산관계나 여러 개입하기 어려운 잘라버리면 그만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럼 그것들을 잘 다듬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자체가 했을 경우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건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은 대구와 관련된 부분인지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하신것인지. 질문했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드리고. 저는 그런 방법을 좀 갖춰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법인설립허가취소는 그전에는 보건복지부가 했었고 지금은 지자체가 하죠. 사회복지법인은 광역단체가 하니 그건 대구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거고요. 사회를 보시는 변호사님도 잘 아실거고요. 대구시에서 뭔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인취소와 관련되서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사회복지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겠죠. 산업화되면서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전공자인 제가 봤을 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집단시설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마련했다라는 걸 하기 위해 시설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게 쪽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방 이후 고도성장으로 인한 것이 이미 선진국을 모델화하면서 차분

히 가면 좋겠는데 전쟁이후 양산된 장애인, 고아에 대해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 형태로 사회복지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왜 못되어왔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교수님과 인권위 토론할 때, 제가 꼭 이제 얘기했던게 뭐냐면 마지막 부모님 이야기가 가슴에 꽂혔는데 원인은 분명 공감이 된다고 하지만, 시설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에 보내고 필요할 때 케어가 힘들 때 잠시 위탁했다가 일 끝나게 되면 같이 자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게 없어서 시설에 보낸다.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누가? 왜?라는 점을 정확히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현재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시설에 사는 사람들을 2만 7천명을 추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전체 다 탈시설을 해야하는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게 목표인가,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머지않아 발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중요한게 서종균처장님이 말씀하신건데, 지역사회 주거와 관련되어있는 것들. 집에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상당수의 장애인분들이 원가정이 없이 무연고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탈시설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거정책을 누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 고민하는 것은 장애인고령자주거지원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상은 65에 이상 장애인이 되는거죠. SH나 LH나 그런 대상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드리는게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의 자립생활주택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주거정책인데 그게 거주시설인데,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주택서비스라는게 주택을 주게되면 거기에 서비스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자립쪽으로 논하는 단체는 그 서비스라는 걸로 포장해서 개입하지 말고, 끊으라는 거잖아요. 왜 국가가 서비스라는 걸 잡고, 장애인을 통제하

려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거와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한다면, 탈시설 자립생활로 연동되는데 여기의 주거형태가 변형되는거죠. 그러한 부분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거정책과는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더 붙어야 하는 서비스, 활보라든가 재산을 위한 연금제도라든지, 직업재활 등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양과 깊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총량적으로 어느정도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총 비용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입소절차에 관련해서,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졌나에 대해서는 입소할 때 확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는 곳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시설설치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2월달에 용역보고서를 완료했습니다.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진 못했는데, 이 부분과 거주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거주시설 내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으나 그중하나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있고,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행동, 돌봄을 높임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김명연: 그것과 탈시설의 예산 균형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강인철: 탈시설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립생활이겠죠. 탈시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기선택권 훈련을 하고 자기선택권 할 수 있도록 밖에 여러 가지 나가게 되면 꿈, 희망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보여줄 것이냐, 치킨먹을 때 청량음료를 맛보게 할 것인가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이 시설에서 탈시설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건 탈시설이 아니라 자립생활이겠죠. 장애급수별

로 얘기한다면 1급 장애인과 3급장애인이 나와서 살려고 할 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이동서비스라든지 여러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게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장애유형마다 어느만큼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갖춰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통계적으로 해보진 못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그런 것을 갖추는 부분을 복지부에 제안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장애인복지사회복지를 위해 진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토론회 오게 되면 두 가지 양가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참 힘들다, 하나는 참 시원하다는 걸 느낍니다. 느끼지 못한 것들을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활동가들의 다른 시각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감도 있지만 돌아가서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해 가슴이 무겁긴 합니다만, 사람이고 24시간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게 행복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 개방형 공무원이기 때문에 맡겨진 시간동안 열심히 하는 것. 문제제기 하는 것. 이게 제가 개방형 계약직으로 가있는 소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 과감히 이걸 아니더라는 자신감을 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을 받고 답을 들으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 대구시 및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법적 책임 추궁

가. 대구시 및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자기책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유린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고 한다)의 법적 책임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운영자 또는 근로자 또는 관련 공무원의 일회적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또는 얇은 우리의 오류도 없지 않는 듯하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량인권유린사건에 대하여 국가 책임이 추궁된 사례는 없다.

대구 희망원 사건의 경우 인권유린 및 부정비리의 직접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당해 시설의 설치 주체인 대구시의 법적 책임이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대구 희망원은 대구시가 설치하고 그 운영(서비스 전달)과 관리를 민간위탁한 것이다. 이 경우 민간위탁은 공권력을 위탁한 협의의 위탁(公務受託私人)이 아니다.

노숙인 시설입소는 여전히 조치제도를 취하고 있으며(노숙인복지법 제7조), 시설입소에 대한 조치권까지(장애인의 경우 시설이용 적격성 심사권)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sup>3)</sup> 운영자인 유지재단이 함께 명시되기는 하지만 ‘대구광역시립희망원’으로 표시되고 있는 점(외형설에 따른 공법상 직무관련성), 대구시가 희망원에 대한 합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사전의 합목적성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이 민간위탁 대상 업무이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조례 제4조 참고).

에 대한 지휘(지도)·감독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 제9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등) 이는 유지재단이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희망원을 운영·관리하더라도 그 효과는 대구시에 귀속되는 ‘대행위탁(代行委託)’에 해당한다.

희망원의 민간위탁을 이와 같이 대행위탁으로 볼 경우 대구시의 감독상 과실입증은 특별히 요하지 않으며 희망원 직원의 대량인권유린은 그 자체 고의적 행위로서 대구시의 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대구시 민간위탁조례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조례 제8조 제1항), 여기서 수탁기관의 책임은 대구시장과의 관계에서 최종적·궁극적 내부책임(손해배상의 경우 구상책임)이며, 시설이용자 등의 외부관계에서의 책임면탈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민간위탁을 ‘협약의 위탁’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구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발제가 말한 것과 같이 대구시의 경우 희망원 설치조례와 민간위탁조례 등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량인권유린과 부정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점, 희망원 설치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숙인복지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라는 점(조례정비체로 인한 위법한 조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평가에 있어 장기에 걸쳐 우수 또는 최우수의 평가를 한 점, 위탁운영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내 35년 이상 재위탁이 이루어진 점 등 대구시의 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대구시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로서 또는 적어도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대구 희망원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서비스 제공의 대행자인 유지재단은 대구시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기책임이 있다.

#### 나. 사회복지시설 대량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보상조례 또는 보상법률 제정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대량적 인권유린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상대주의에 기인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산물인 노숙인·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격리와 강제노역 등의 국가의 인권유린정책에 동의해 왔으며 적지 않게 갈채를 보냈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던 유지재단에 의한 자행된 장기에 걸친 대량인권유린 사건인 대구 희망원 사건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그 자체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부 악한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것으로 의제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한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희망원 사건의 공모자이며 방조자인 것이다. 대구 희망원 사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런 대량적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개별적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손해배상에는 소멸시효 등 법적 장애도 적지 않다.

대량적 인권유린사건의 경우 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희생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피해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희망원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고 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보증하기 위한 탈시설정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광장의 촛불이 요구하는 과거청산과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가장 목소리가 낮은 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구 희망원 사건 등의 대량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

고 이들에 대한 사죄와 함께 사회보상과 재방방지를 위한 탈시설정책 등  
가감한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 2. 기타 토론

가. 신자유주의 인권담론은 장애인선택권과 시설 포지티브 전략, 집중지원시설의 신설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시설 수용을 강화하고 합법화한다. 국가는 장애인 탈시설정책 수립과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 탈시설권과 탈시설정책은 장애인의 '아우성과 외침의 권리'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에 있어 예산상 이유 등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설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는 모든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권은 장애인의 종합적 권리이다. 탈시설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등 심의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장애인의 차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통합사회'(사회통합이 아님)를 만들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완료했으면 한다.

나. 자신의 비용으로 인건비와 서비스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존형 또는 공영형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여 사회의 공유제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다. 조만간 있을 헌법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독립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모든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침해금지, 보호의무, 실현의무)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참고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활동일지

#### ■ 2016년 2월 ~ 3월 : 익명의 투서, 대구시 일부 특별점검

-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대구시, 시민단체, 관공서 등에 익명의 투서 유포
- 2016년 2월 16일 / 대구시, 대구시립희망원 성요한의집(정신요양시설) 익명제보에 따른 생활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점검 시행 (지적사항 : 입소생활인 폭행사실 확인, 작업치료 부적절, 외출·외박관리 미흡, 생활인 보호소홀, 인권지킴이단 미구성 → 행정상 권고조치 1건, 개선명령 4건, 신분상 조치 2건(폭행관련자, 작업치료 담당자 등))

#### ■ 2016년 4월 ~ 8월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직권조사, 언론 특필

- 4월 11일 / 시설종사자(노동조합),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숙인시설 내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5월 9일 / 달성경찰서 앞 희망원의 장애인 폭행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집회
- 6월 10일 / 시설종사자(노동조합), 거주인 다수 사망사건, 급식비리, 강제노동 등 인권위 추가 제보
- 8월 8일~10일, 23일~24일 / 국가인권위원회, 희망원 종사자 및 거주인 대상 직권조사 2회 실시
- 8월 17일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국가인권위와 대구시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올바른 대책을 발표하라!> 성명서 발표
- 8월 중 / 한겨레, '폭행, 갈취, 강제노동... 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등 2회 보도, 영남일보, '시립희망원 '급식비 횡령' 증거자료 나왔다' 등 10회 보도

#### ■ 2016년 9월 ~ 10월 : 국정감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에 따른 여론 확산

- 9월 2일 /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공동위원장 정중규, 김광수)
- 9월 5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건에 관한 대구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 9월 7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회견 개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면담 진행
- 9월 8일 / 대구시, 희망원 거주인 인권실태조사 진행(당초 50% 표본조사에서 여론 악하되자 100% 전수 조사로 변경 실시)
  - 9월 19일 /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와 인권유린에 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1차 현장조사 실시
  - 9월 21일 /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 발표 (생활인 실태조사, 인권지킴이단 설치, CCTV 설치 권고 등 추진)  
/ <복지부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대책은 국정감사용 책임편피 꼼수대책에 불과하다> 성명서 발표
  - 9월 23일 / 정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공동위원장 윤소하, 장태수)
  - 9월 26일 ~ 10월 21일 / 2016년 국정감사 실시
  - 9월 26일 ~ 27일 /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진행(증인 글라라의집 김구노원장신부, 희망원 임춘석 사무국장 참석, 참고인 희망원 노조 황성원지회장, 조정희국장 참석, 대구시 증인 김영애 복지국장, 김만주 복지정책관)
  - 9월 28일 /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2차 현장조사 실시 (2차 조사에서 문서파쇄 의혹, 부정선거 의혹 추가 발견, SBS 방송사 팀에 대한 취재 방해로 갈등)
  - 9월 30일 / 정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대응 논의
  - 10월 4일 /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독일연수 실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시에서 취소시킴
  - 10월 6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및 1차 대표자 회의 개최  
/ 희망원 생계비(주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및 연간4억 횡령의혹 고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  
/ 희망원 생계비(주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및 연간4억 횡령의혹 고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구시청)  
/ 대구시, 대구시립희망원 대상 특별감사 실시 발표
  - 10월 7일 / 대구희망원대책위-대구시 감사관실 책임자 면담  
/ 희망원 내 2층 기계실 문 폐쇄 후, 대량 문서 파쇄 사실 확인, 문서내용은 미확인
  - 10월 8일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희망원 문제 방영(1048회, 가려진 죽음 - 대구 희

- 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 10월 8일 / 유지재단 산하 매일신문 '시립희망원엔 1,500여명 자원봉사...생활인 입·퇴소나 외출도 자유로워' 언론 보도
  - 10월 10일 / 희망원, 홈페이지 통해 입장 게재 (심려 끼친 점에 대한 사과, SBS 편파방송 유감 등)
    - / 계산성당 앞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규탄 집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 앞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와 결과발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천주교대구대교구, 홈페이지 통해 박강수, 김구노, 박재철, 박정봉 원장신부 '희망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교구민에게 드리는 말씀' 게재
  - 10월 11일 / 희망원 앞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직권조사 촉구 집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 3차 희망원 방문조사 실시(사망자에 관한 전수 조사)
  - 10월 12일 /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조환길, 교구 홈페이지 통해 '대구시민과 교구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게재
  - 10월 13일 / 희망원, 사과 기자회견 개최(희망원 시설장 4명, 복지·회계·시설 등 7개 분야 중간관리자 16명 포함 총 24명 지난 11일 사표 제출 언급)
    - / 천주교대구대교구청 앞 조환길 대주교의 해결 촉구 및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개최 (△투명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약속, △현직 희망원 원장 및 간부, 사건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대구시에 운영권 반납을 포함한 진정한 반성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희망원 직원들에 대한 시설 측의 사 후 진술서 제출 요구 사실 확인
    -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희망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단표 허위 자료 의혹 제기
    -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대구 희망원 방문과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 요청
    - / 매일신문 편집국 41기 이하 일동, '편집권 독립으로 매일신문 바로 세우자' 대자보 성명 발표
  - 10월 14일 /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엄정한 행정조치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추진하겠다")
  - 10월 16일 / 희망원 내 김 모씨(75세) 숨진 채 발견
  - 10월 17일 / 대구시립희망원의 생계비 횡령 및 자료조작 증거물 제출 기자회견 개최

- 10월 19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무력화시킨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법적·행정적 처벌을 취하라!> 성명서 발표
- 10월 20일 /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대표 김철재 신부), 대구희망원대책위에 입장 전달 (대책위의 요구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단 사건 관계 간부들의 직무정지는 현실적인 문제(업무공백, 업무혼란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내외부와 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조정한다, 수탁사항은 교구 측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대구시의 결정에 따른다)
- 10월 24일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 10월 26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전국장애계 대책위원회 결성
- 10월 27일 / 대구지방검찰청, 희망원 압수수색 실시, 임춘석 국장 가택압수수색 실시 (시립희망원 급식업체 대표이사 사무실과 주거지, 회계책임자 주거지 등 15곳 압수수색)  
/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 대구희망원 이종구, 이덕로, 김대호, 박정봉 4명 업무정지  
/ <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횡령,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성역없이 수사하여 처벌하라!> 성명서 발표  
/ 희망원 前부원장 김일규, 혈액암 투병 중 사망

**■ 2016년 11월 ~ 12월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 천주교대구대교구 운영권 반납의사 표명**

- 11월 1일 /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조환길 교구장은 직접 나서 교구를 쇄신하고 희망원사태를 해결하라!> 성명서 발표
- 11월 2일 / 한국 SOS 대구 어린이 마을 횡령의혹 제기 (시립희망원 前 원장이 운영)
- 11월 3일 ~ 4일 /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전국 장애계 집중 결의대회 1박 2일 진행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시설수용 희생자 추모, 대구시 규탄 등)
- 11월 7일 /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감금 및 추가 납품비리 의혹 규명 기자회견 개최
- 11월 8일 / 대구시, 천주교유지재단 희망원 운영권 반납의사 표명 보도자료 배포  
/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운영권 반납은 환영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구시는 '탈시설'을 포함한 혁신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성명서 발표
- 11월 9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횡령, 비리 고발 기자회견 개최
- 11월 10일 /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및 대구희망원대책위 대표자 면담 진행
- 11월 24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마련을 위한 1차 대구시 공식

## 협의 진행

- 11월 28일 / 대구정신병원과 대구시립희망원 비정상적 운영구조 만든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 (25년 간 무자격으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대구시로부터 정신병원 수탁 받아 운영. 특혜 의혹)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구시립희망원 직권조사 결과발표  
(※상해/폭행/학대/횡령/배임/사망사건 등 관계자 검찰 수사 의뢰, 노숙인에 대한 적합한 수용 보호 방안 마련, 종사자 인력지원 기준 강화 등 복지부장관에 권고, 유지재단 위탁 취소, 시설규모 적정화,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등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소속직원 징계, 보조금 환수조치, 희망원 직원 징계조치 등 대구시장에 권고)  
/ 대구지검, 희망원 비자금 조성 사실 폭로 협박으로 원장 신부에게 1억 원 뜯어낸 혐의로 前 회계 직원 구속 기소 및 1명 불구속 기소 사실 언론 통해 보도
- 11월 29일 / <대구시립희망원 직권조사 결과발표를 규탄하며-전면적인 탈시설 추진을 통한 시설폐쇄와 기능전환만이 해답이다> 성명서 발표
- 11월 30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마련을 위한 2차 대구시 공식 협의 진행
- 12월 6일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대구경북 2016년 5대 인권뉴스 선정
- 12월 7일 / <대구시 특별감사반은 보건건강과와 대구정신병원에 대해 감사하고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성명서 발표
- 12월 9일 / 세계인권선언 대구경북 인권현안 토론회 '대구 희망원, 어디로 가야 하나' 개최
- 12월 12일 / 대구시 2017년 장애인 복지예산 규탄 및 권영진 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2월 19일 /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안무치한 희망원, 검찰의 성역없이 수사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 12월 21일 /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 및 대구희망원대책위, 탈시설 지원상담 조사 1차 실무협의 진행
- 12월 23일 / 희망원 비리관련 구속/불구속 기소자 2인 1심 선고 (공갈 등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7월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시립희망원 핵심 관계자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
- 12월 26일 / 대구시립희망원 비리관계자 전원구속 및 수사와 중간발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대구지검,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인권 유린 의혹 일부 확인 언론 발표, 거주인 가혹행위 및 폭행치사 등 교사 3명 구속 기소

- 12월 28일 / 권영진 시장 송년 기자간담회, 희망원 사건에 관한 기자 질문에 “아마 검찰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데는 책임지고 단죄할데는 단죄하게 될 것이다. 대구시가 해야 할 부분은 대구시립희망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언급
- 12월 29일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대구 10대 복지뉴스 선정
- 12월 31일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영남일보 선정 대구경북 10대 뉴스 선정

■ 2017년 1월 ~ 3월 : 대구지검 중간수사결과 발표, 대구시 일방적 희망원 대책 발표

- 1월 2일 / 2017년 대구광역시 정기인사에 관한 비판 성명 발표 (희망원 관피아 문제의 직·간접적 관계 공무원이 승진 및 복귀, 희망원 대책 면담 주관한 복지국장 교체 등) / 대구참여연대, 대구 적폐 청산 10대 과제 중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선정
- 1월 5일 / <권영진 대구시장의 관피아 척결은 말뿐이었다. A씨 요직발령은 행정미꾸라지 구하기, 역주행 인사다> 성명서 발표
- 1월 9일 / 대구지검, 특수상해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희망원 팀장급 간부 윤 모(45) 씨와 한 모(50) 씨 등 2명 구속 기소
- 1월 11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조환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 1월 13일 / 대구지검, 희망원 비자금에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 확인하여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 최근 압수수색한 사실 발표 / 대구MBC, ‘희망원 사표냈던 간부들 도로 제자리에’ 보도 (사표 수리 0건)
- 1월 16일 / <검찰은 ‘사목공제회’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흘러갔으면 조환길 대주교를 소환조사하라> 성명서 발표
- 1월 17일 /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직원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신동식 특별위원회 생활인 위원장) / 국민의당, 대구희망원 불법 비자금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월 19일 / 희망원 인권유린 및 횡령, 천주교대구대교구 철저한 수사 및 조환길 대주교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희망원 前총괄위원장신부 배임표, 사무국장 임춘석 구속 영장 청구
- 1월 20일 / <법원의 배모 희망원 전 원장신부 구속과 임 모 사무국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발표
- 1월 21일 /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이게 복

지나?!> 시국대회 개최

- 1월 24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마련을 위한 3차 대구시 공식 협의 진행  
/ <검찰은 조환길 대주교에게 흘러간 비자금 의혹과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돈 세탁소인 '사목 공제회'에 대한 수사상황을 밝혀라> 성명서 발표
- 1월 26일 /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 및 대구희망원대책위, 탈시설 지원상담 조사 2차 실무협의 진행
- 2월 1일 / 명동성당 앞 '천주교는 대구시립희망원 즉각 사건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최
- 2월 7일 / <검찰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한 또 하나의 시설,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비자금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 성명서 발표
- 2월 9일 / 대구지검,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급식비횡령원장등7명구속기소, 16명불구속기소 / 업무상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사망, 생활재활교사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금품편취 등, 내부규칙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자금 관련 비리 등) (“수역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구대교구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다” 언급)  
/ <검찰의 꼬리 자르기 축소수사를 규탄하다> 긴급 성명서 발표  
/ 대구지법, 감금, 의료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팀장급 직원 7명(51) 징역 8개월 선고
- 2월 10일 / 특수상해,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희망원 행정팀장 윤모(46)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 2월 16일 / 대구지검 중간수사결과 규탄 및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 이사장 즉각 수사 촉구 기자회견
- 2월 23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마련을 위한 4차 대구시 공식 협의 진행 (대구시 공공운영 체계 마련 및 2018년 임기 내 장애인 생활인 우선 탈시설 추진, 글라라의 집 폐쇄 등에 관해 대구시 입장 변화 없어 협의 결렬)
- 2월 24일 / 공공운수노조, 희망원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개최
- 2월 27일 / 희망원 내 출근 선전전 돌입
- 2월 28일 /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 해결의지 없는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 3월 2일 /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박모씨(62세, 지체장애 2급) 2월 4일 남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한 것에 관한 언론 보도

- 3월 6일 /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3월 8일 / '법원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반인권적, 반복지적 행위를 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행위자를 엄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 대구지법, 독방 감금시설 운영 혐의 前 원장 등 첫 재판 진행 (감금시설 운영 인정, 공모혐의 부인)
- 3월 13일 / 대구시, 대구시립희망원 감사결과 및 혁신대책 발표  
/ <대구시의 희망원 감사는 하나하나한 부실감사, 제식구 감싸기 징계다. 민간위탁 반대,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운영. 형식적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폐쇄, 기능전환을 요구한다.> 성명서 발표
- 3월 14일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2017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및 <대구시는 희망원 공적 운영을 통해 탈시설-기능전환, 수용시설 폐쇄를 추진하라!> 성명서 발표,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5대 주제 37개 정책요구안 전달
- 3월 22일 / 대구희망원전국장애계대책위 명동성당 특별미사 기습시위
- 3월 23일 / 대구시, 대구희망원 민간위탁 대상자 모집 공고
- 3월 30일~31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탈시설-자립생활권리쟁취 집중행동의 날

##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부 희망원지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노동사목, 대구노동세상, 대구여성광장,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알바노조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대구여성인권센터,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대구환경

운동연합,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녹색당  
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민중연합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국민의당대구시  
당,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

■ 발행일 2017. 4. 4

■ 발행처

- 주최 :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
- 주관 :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벽지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3층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문의: 02-795-0394 / 02-739-1420